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11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고민정 · 박성준 · 민형배
김 윤 · 백승아 · 박지원
윤건영 · 이용선 · 김준혁
강경숙 · 박지혜 · 김문수
조정식 · 김영호 · 이재강
조인철 · 이병진 · 정일영
이광희 · 문정복 · 정을호
진선미 · 박선원 · 임미애
황명선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된 행위로, 출신 국가,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주거지 등을 말한다),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 ----- ----- ----- ----- ----- ----- ----- ----- -.
1. ~ 32. (생략) <u><신설></u>	1. ~ 32. (현행과 같음)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로 출신 국가,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

	<u>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주거지 등을 말한다),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 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 외집회 및 시위</u>
--	---